

2002. 6. 12(水)

第7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제 · 연사 : 법인세제 개편방안(이인실 선임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조세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제도 역시 경제·사회환경에 영향
-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비롯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심화
 - 최근 각국 조세개혁의 중심적 과제가 자본소득세이며 자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개
-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 법인세 연구 방향- 효율성 분석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형평성 분석 및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및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Fuchs, Krueger, and Poterba(1997)는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지게됨
 - Slemrod(1995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의 50% 이상이 법인세의 부담이 비자본 생산요소에 전가

II.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
 - 이 같은 감세정책의 추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

<표 2-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5월 ‘2002년 감세조정안’ 하·상원 통과 ▶ 11년간 1조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9.6%→33%)하고 소득 공제를 확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월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51%→42%) ▶ 법인세율 인하(40/30%→25%)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003년까지 1천2억프랑 규모의 세금감면 ▶ 법인세율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7%→33.3%)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37%) 및 기준금액 하향조정(3000만엔→1800만엔) ▶ 법인세율 인하 (34.5%→30%)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05년까지 세금감면계획 시행 ▶ 2005년까지 소득세 규모15%, 금액으로는 580억달러의 세금감면 ▶ 소득세 과표에 ‘물가연동제’ 도입 ▶ 법인세율(기술 등의 주요산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28%→21%)

-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7년 36.7%, 1998년 35.5%, 1999년 34.8% 등으로 계속 인하.

<표 2-2>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구간과 세율

	법인세 과세구간	법인세율(%)
한국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미국	5만달러 미만	15
	5만달러 ~ 7만5천달러	25
	7만5천달러 ~ 10만달러	34
	10만달러 ~ 33만 5천달러	39
	33만5천달러 ~ 1천만달러	34
	1천만달러 ~ 1500만달러	35
	1500만달러 ~ 1822만 3333달러	38
	1822만 3333달러 이상	35
일본	자본금 1억엔 이하, 연간소득 8백만엔 이하	22
	그 외의 법인	30
영국		30
독일	유보소득	40(실효세율 42.2 ¹⁾)
	배당소득	30(실효세율31.65)
프랑스 ²⁾		33.33
대만	5만NT달러 이하	면제
	5만NT달러 초과 10만NT달러 이하	15
	10만NT달러 초과	25

주: 1) 199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동 부가세율이 7.5%였음.

2) 매출액 5천프랑 초과법인은 15%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됨(1999년까지는 10%).

-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

<표 2-3>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단위 : %)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1970	13.2	8.7	5.7	26.3	8.7	3.5	3.2	1.9	5.3	2.4
1975	11.4	6.2	4.4	20.6	7.5	2.9	2.2	1.6	4.4	2.3
1980	10.8	8.4	5.5	21.8	7.7	2.8	3.0	2.1	5.6	2.7
1981	9.1	9.2	5.0	20.3	7.8	2.4	3.4	1.9	5.3	2.7
1982	7.4	9.7	5.1	19.8	7.8	2.0	3.8	1.9	5.2	2.8
1983	5.9	10.7	5.1	19.6	7.4	1.5	4.0	1.9	5.3	2.7
1984	7.6	11.5	5.4	21.1	7.9	1.9	4.3	2.0	5.7	2.8
1985	7.5	12.6	6.1	21.0	8.0	1.9	4.7	2.3	5.8	2.8
1986	7.4	10.6	6.0	20.7	7.8	1.9	4.0	2.3	5.8	2.9
1987	8.6	10.5	5.1	23.0	7.7	2.2	3.9	1.9	6.8	2.9
1988	8.9	10.9	5.3	24.7	7.8	2.3	4.0	2.0	7.4	2.9
1989	9.0	12.6	5.5	24.3	7.8	2.4	4.6	2.1	7.3	2.9
1990	7.7	11.6	4.8	21.6	7.9	2.0	4.2	1.8	6.6	2.8
1991	7.7	9.4	4.3	20.0	7.3	2.0	3.3	1.6	6.0	2.7
1992	7.6	7.7	4.0	17.3	6.8	2.0	2.7	1.5	4.9	2.8
1993	8.3	7.4	3.6	14.9	7.5	2.2	2.5	1.4	4.2	2.6
1994	9.0	8.0	2.9	14.8	7.6	2.4	2.7	1.1	4.0	2.8
1995	9.4	9.4	2.8	15.3	8.0	2.6	3.3	1.1	4.3	2.9
1996	9.6	10.7	3.8	16.4	8.3	2.6	3.7	1.4	4.6	3.0
1997	9.4	12.2	4.1	15.0	8.8	2.6	4.3	1.5	4.2	3.2
1998	9.0	10.9	4.4	13.7	8.9	2.5	4.1	1.6	3.7	3.3
1999	8.3	10.4	4.8	12.9	-	2.4	3.8	1.8	3.4	-
2000	-	9.8	4.8	12.8	-	-	3.7	1.8	3.5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2.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과 법인세 폐지 논의

1. 조세감면 정책

- 미국경제는 1970년 이후 1974년~75년, 1980년~82년, 1990년~91년 등 크게 세 번의 불경기를 경험
- 미국정부는 이 때마다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사용
 - 첫번째,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전쟁 발발이후 당시 포드 대통령은 16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이보다 많은 210억달러를 승인-.이러한 감세정책과 일시적인 사회보장세 감세 등은 개인들의 실질적인 처분소득을 증가시켜 하반기부터 GNP성장률이 상승하는 결과

- 두 번째, 이란혁명으로 인하여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9년에 시작 - 감세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 감세정책으로 인해 레이건-부시 시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
- 세 번째,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W.부시는 선거기간 중 핵심공약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 실시-향후 10년간에 총액 1.6조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시행-2000년 GDP 대비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세정책비용으로 지불

<표 2-4>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년~2003년	27%	30%	35%	38.6%
2004년~2005년	26%	29%	34%	37.6%
2006년 이후	25%	28%	33%	35%

<표 2-5>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계획

	현행	2001년~2004년	2005년~2008년	2009년	2010년~
자녀세액공제	500	600	700	800	1000

2. 법인세 폐지 논의

- 미국의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에 의해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의
 - 모든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를 금지하는 조세원칙에 위배-주주의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그 소득의 원천인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
 - 미국의 오닐(Paul O' Neill) 미국 재무부장관은 2001년 5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지(Financial Time)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소득세를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
 -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최고 세율이 35%인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보충한다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정책제안
- 미국의 법인세 폐지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1960년대 및 1970년대 경제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문제제기
 - 1985년에는 미의회 예산처(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법인소득세 개편'(「Revising the Corporate Income Tax」)이란 보고서를 발간
 - 1992년에 미국재무부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재무성보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한번의 과세' (「Report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 Taxing Business Income Once」)란 보고서를 발간

2.3. 국제조세경쟁

- 주요국의 최근 세제개편 방향은 생산요소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본 및 노동의 유치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
 - 폐쇄경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세에 대한 유효세율부담을 낮추면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증대
 - 개방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본과세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소비과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같은 국내경제정책 또한 다른 나라의 자본소득과세에 영향

-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제적 유동자본에 대한 조세경쟁에 가담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
 -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로 하여금 세수확보를 위해 요소 및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조세구조로의 전환을 유도
 -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유럽국가의 경우 잘 나타남
 - 폐쇄경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세에 대한 유효세율부담을 낮추면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증대
 - 개방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본과세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소비과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같은 국내경제정책 또한 다른 나라의 자본소득과세에 영향

<표 2-6> OECD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벨기엘	45	41	40.2	39
덴마크	50	50	34	32
핀란드	57	42	25	28
프랑스	50	37	33.3	33.3
그리스	49	40	40	40
아이슬랜드	51	48	33	30
아일랜드	50	40	40	28
이탈리아	46	46	52.2	37
네델란드	43	42	33	35
노르웨이	51	51	28	28
포르투갈	50	40	39.6	34
스페인	35	35	35	35
스웨덴	57	30	28	28
영국	45	35	33	31
터키	49	47	42.8	25
독일	56	50	58.9/46.1	40
미국	51	39	40	35
오스트리아	55	30	34	34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9

- 이러한 세계각국의 조세경쟁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지나친 조세경쟁이 자본배분에 왜곡 등 부작용 초래
 - OECD는 유해조세관행에 대하여 공동 대응-바람직하지 않은 조세감면제도의 합리적 판정기준과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국제적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필요성 제기
 - 1998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서비스, 금융분야의 조세감면제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승인-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제도

Ⅲ.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3.1. 법인세율

-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의 과세대상, 즉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 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물론 적정유보초과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등에도 법인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해 오다가 2002년들어 적정유보초과 소득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는 폐지
 -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둠

〈표 3-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법인종류별		과세소득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³⁾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영리법인	일반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	국내외의 모든 소득	○ ²⁾	○	○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주: 1)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 등은 내국법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말함.

2)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2002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음

3) 특별부가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음

자료: 국세청, 2000.

<표 3-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화

1980년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년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년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년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년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년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년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년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년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2년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3.2. 법인세수

<표 3-3> 법인세 징수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총 국 세	699,277	7.6	677,977	-3.0	756,580	11.59	929,347	22.83
일반회계	609,092	6.74	588,376	-3.4	650,671	10.5	819,846	26.0
○ 소득세	148,679	0.6	171,940	15.6	158,546	-7.7	175,089	10.4
○ 법인세	94,246	0.7	107,758	14.3	93,654	-13.0	178,784	90.8
○ 상속세	6,047	6.8	3,095	-48.8	4,807	55.3	4,487	-6.6
○ 증여세	5,565	38.8	3,701	-33.4	4,205	13.6	5,402	28.4
○ 재평가세	1,672	-22.8	4,572	173.4	10,173	122.5	5,372	-47.1
○ 부가가치세	194,880	16.0	157,068	-19.4	203,690	29.6	232,120	13.9
○ 특별소비세	30,364	-2.6	22,115	-27.1	27,133	22.6	29,846	10.0
○ 증권거래세	2,619	-9.5	2,425	-7.4	13,537	583.1	27,359	79.9
○ 인지세	3,901	9.5	3,035	-22.1	3,709	22.2	3,876	4.5
○ 과년도수입	7,760	33.0	9,228	18.9	11,771	27.5	14,525	23.3
○ 교통세	55,471	14.9	65,040	17.2	72,557	11.5	84,036	15.8
○ 관 세	57,976	9.1	38,360	-33.8	46,873	22.1	57,997	23.7
특별회계	90,186	14.1	89,601	-0.6	105,909	18.2	109,501	3.3
○ 주 세	17,898	7.3	18,145	1.3	20,780	14.5	18,644	-10.1
○ 전화세	7,886	19.3	9,219	16.9	11,914	29.2	14,574	22.3
○ 교통세	-		-		-		-	
○ 교육세	53,985	30.8	52,031	-3.6	52,969	1.8	57,983	9.4
○ 농특세	10,398	-30.0	10,154	-2.3	20,234	99.2	18,299	-9.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4> 주요관련지표 대비 법인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법인세	국세대비	총조세대비	법인소득대비	GDP대비
1961년	1,707	6.6	6.0	-	0.6
1965년	5,695	9.8	8.2	-	0.7
1970년	42,351	11.6	10.6	-	1.6
1975년	130,480	9.4	8.4	43.9	1.3
1980년	485,206	8.4	7.4	20.2	1.3
1981년	594,062	8.2	7.3	32.8	1.3
1982년	781,303	9.3	8.2	32.1	1.4
1983년	863,691	8.6	7.5	24.7	1.4
1984년	923,535	8.5	7.4	19.7	1.3
1985년	1,126,731	9.5	8.3	20.8	1.4
1986년	1,191,401	8.8	7.7	20.2	1.3
1987년	1,682,444	10.3	9.1	20.8	1.5
1988년	2,247,429	11.5	10.0	22.5	1.7
1989년	3,107,894	14.6	11.9	23.2	2.1
1990년	3,226,128	12.0	9.7	21.5	1.8
1991년	4,585,547	15.1	12.0	26.6	2.1
1992년	5,941,051	16.9	13.3	29.7	2.4
1993년	5,862,329	14.9	11.7	27.8	2.1
1994년	7,387,568	15.6	12.2	29.6	2.3
1995년	8,662,631	15.3	12.0	27.6	2.3
1996년	9,356,104	14.4	11.4	28.3	2.2
1997년	9,424,669	13.5	10.7	28.3	2.1
1998년	10,775,797	15.9	12.7	32.7	2.4
1999년	9,365,392	12.4	9.9	24.2	1.9
2000년	17,878,400	22.4	18.2	20.8	3.5

자료: 통계청 kosis.nso.go.kr 및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5> GDP 및 총세입 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 (1998년 기준)

(단위 :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GDP대비 법인세수	2.6	2.6	3.8	1.6	4.1	2.9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12.2	9.0	13.3	4.4	11.0	5.7

자료: OECD, 2000.

<표 3-6>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1990~96 ¹⁾	1997	1998	1999	2000	2001	미국 ²⁾	일본 ³⁾
재무구조 관련지표								
부채비율	301.7	396.3	303.0	214.7	210.6	182.2	159.4	159.7
차입금의존도	45.7	54.2	50.8	42.8	41.2	39.8	27.4	29.7
유동비율	94.8	91.8	89.8	92.0	83.2	97.9	122.1	132.3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7.6	8.3	6.1	6.6	7.4	5.5	5.4*	2.9**
매출액경상이익률	2.6	-0.3	-1.8	1.7	1.3	0.4	2.8*	2.9**
금융비용부담률	5.8	6.4	9.0	6.9	4.7	4.2	2.4*	0.8**
인건비부담률	13.2	11.4	9.8	9.8	9.7	10.0	-	-
이자보상비율	-	129.1	68.3	96.1	157.2	132.6	224.9*	551.0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이며
투하자본수익률 및 가중 평균자본비용과 인건비부담률은 1992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임.

2) 2001년 기준임. (*는 2001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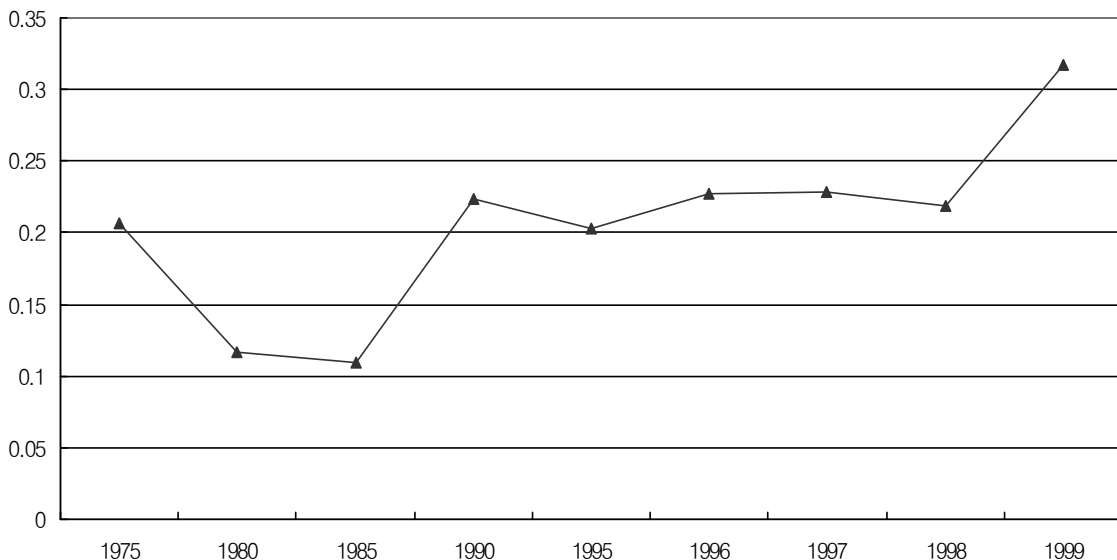
3) 2000년 기준임. (**는 199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3.3. 유효세율기준의 법인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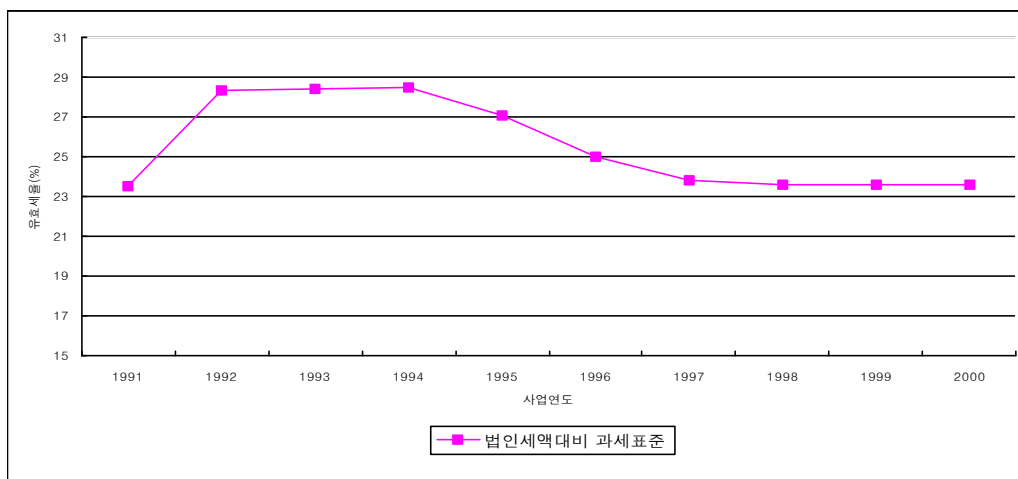
- 법정세율보다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 법인의 영업잉여(profit)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법인세/법인영업잉여)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폭 상승

<그림 3-1>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 추이



-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그림 3-2> 결정세액기준 유효세율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법인세표

- 미래의 투자에 대한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한계세율은 낮은 편이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3.4. 한국의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¹⁾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
-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표 3-7>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단위 : %)

	기업 규모		자본재			투자 재원		
	대기업	중소기업	건축물	기계	비상각자본	대출	유상증자	사내유보
1982년	-24.44	-14.47	-14.16	-31.02	-16.08	-51.55	41.56	44.86
1987년	-21.80	-19.82	-10.09	-32.76	-9.41	-32.76	27.66	30.17
1992년	-25.21	-30.31	-8.47	-43.39	-7.55	-46.46	18.51	22.18
1997년	-15.78	-16.56	-2.31	-28.59	-6.04	-32.96	21.75	24.26

자료 : Dalsgaard, 2000.

1) Dalsgaard, Thomas,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71, OECD 2000.

<표 3-8> 제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

(단위 : %)

	자금조달 ¹⁾			유형자본 ²⁾			가중 평균	표준 편차
	사내유보	유상증자	부채	기계	건축물	재고		
미국	1.67	4.90	1.43	1.51	2.54	2.02	1.91	1.20
일본	2.66	3.88	0.36	0.97	3.14	2.79	1.98	1.23
독일	1.06	2.21	1.21	0.85	1.40	1.91	1.24	0.48
영국	2.74	2.24	1.46	1.88	2.21	3.09	2.24	0.53
한국(2000)	0.89	2.22	0.46	0.44	1.33	1.26	0.87	0.61
한국(2001) ³⁾	0.61	1.41	1.41	0.64	1.34	1.26	0.97	0.35
멕시코	0.77	1.04	1.04	0.73	0.75	1.43	0.89	0.25
스웨덴	1.73	2.17	0.68	1.14	1.43	1.99	1.41	0.51
OECD 평균	1.72	2.59	0.99	1.17	1.71	2.25	1.55	0.56

주: 1) 기계장치 50, 건축물 28, 재고 22의 가중치로 계산함.

2) 사내유보 55, 유상증자 10, 부채 35의 가중치로 계산함.

3)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반영함.

자료: Dalsgaard, 2000.

-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표준 법정 세율이 유사한 수준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자본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소득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

<표 3-9> 자본이득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총법인세율	한계 배당세율	금융 자본이득
미국	47	40	68	0~20
일본	20	41	71	26
독일	56	58	50	0
영국	40	31	48	0~40
한국 ¹⁾	24(45)	31	46(45)	0~22
멕시코	40	32	40	0
스웨덴	30	28	50	30

주: 1) 한국의 경우 ()안에서와 같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 실시됨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고 한계세율이 44.5% 증가함.

자료: Dalsgaard, 2000.

<표 3-10> 자본소득과세 과세방법의 국제비교

	과세방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손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 ▶ 특별부가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대권) 주식 등(과점주주주식, 부동산과대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기준시가 방법: 토지 또는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 실지거래가액 방법:비상장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기타 자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익: 전액이 당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처분손: 3천달러 한도로 당기의 다른 소득과 상쇄가능 ▶ 개인, 신탁, 유산재단의 순자본소득: 최고세율 20%로 과세 ▶ 법인자본소득: 일반세율로 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산:50만엔 기초공제후 과세양도익을 타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부동산양도익: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유부동산:20%(주민세6%) - 단기보유부동산: 40%(주민세 12%)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00% - 초단기보유부동산: 50%(주민세15%)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20%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율이 적용됨 ▶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 ▶ 세액공제를 받는 자본소득은 취득원가를 낮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 공장, 기계설비 - 선박, 항공기 - 영업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됨 ▶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의 50%를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동종 신규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경감 - 실현된 자본소득이 대체 자산의 취득에 즉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투자보 조금 설정 가능 ▶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매매에 의해 실현된 자본소득은 이연공제할 수 없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이후 일반소득과 같이 부가세를 포함한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 ▶ 경감세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참여지분 - 경영권 인수로 취득한 주식 - 5년 이상 보유한 벤처캐피탈투자기금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중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 이전 및 저당권 설정시 가치증가분 - 세율:토지가치증가분100%까지 40%, 100%~200%는 50%, 200%초과분 60%

- 모든 세부담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 법인세가 폐지된 국가는 아직까지는 없음
- 그러나 최근 법인세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해외투자법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법인소득세가 존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투자·재무·배당결정에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가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4년에 '1/3합산(gross-up)방식'에서 '저세율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1999년에는 '법인세부담율 합산방식'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2002년 들어서는 오히려 '16%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후퇴

<표 3-11> 이중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법인단계		개인단계	조정방식
	적용세율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한국	27% /15%	과세소득에 포함 (공제제도 없음)	gross up비율을 19% 또는 실제법인세부담률에 의한 비율(법인세부담율 ²)/(1-법인세부담률)중 선택 - 공제율 한도: 38%	임퓨테이션 방식
미국	35% (기본세율)	80% 이상 지분소유: 100% 공제 20% 이상 지분소유: 80% 공제 20% 미만 지분소유: 70% 공제	종합과세 (조정제도 없음 ¹)	조정없음
일본	30%	25% 이상 지분소유 : 100% 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이하: 배당 소득의 10% 세액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초과: 배당소득의 5% 세액공제	개산배당세액공제방식
영국	30%	전액공제	수취배당액의 1/9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 방식
독일	30%	개인주주와 동일	수취배당액이 100/70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 방식
프랑스	33.33%	개인주주와 동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소득에서 공제)	수취배당액의 5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 방식
대만	15%/25%	배당소득의 80% 공제	33.33~48.15%의 값을 갖는 세액공제가능비율을 실제배당수령액에 곱한 금액	임퓨테이션 방식

IV. 결론 및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1. 결론

- 법인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 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후생측면에서 우월
 - 둘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
 - 셋째,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보전을 세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형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우월
 - 넷째, 법인세 폐지는 자본소득세에 대한 전반적 정비와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함

4.2.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세금감면이 14.6%에 이르고 이는 GDP의 2.5%에 달하는 규모
-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일몰법제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 현재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지출액은 1998년의 경우 GDP의 0.6%(OECD 대부분 국가들의 동 비중이 0.2% 수준)

<표 4-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 10억원)

	세목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계	
중소기업	89	197		286	0.1
설비투자	14	349		362	0.1
기술 및 인력개발	17	354		370	0.1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242	299		541	0.1
도시·농촌 균형발전	385	62	32	479	0.1
저축 및 금융기관	2,621	231		2,852	0.6
사회보험	249	302		551	0.1
근로자	1,192	14		1,206	0.3
교육문화	156	467	5	629	0.1
기타	4	451		455	0.1
총계	4,967	2,726	38	7,731	1.7

자료 : Dalsgaard(2000)

3.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조정

- 본 연구에서 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20% 인하(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2.7~5.4% 포인트)시키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측면에서나 국민전체의 후생측면에서 최적

4.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 본결손금 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
 -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

<표 4-2>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멕시코	스웨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년)	20	7	무제한	무제한	5	10	무제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년)	2	1	1	1	0(2 ¹⁾)	0	0

주: 1)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2년간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5.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 현행 세제는 1회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한계
 - o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

6.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은 중장기 검토과제로만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7.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와 준조세의 정비

- 유사한 취지의 법정준조세와, 존치 필요성이 퇴색된 법정준조세를 폐지 및 정비
- 부담요율을 경감하고 납부제도를 개선
- 부과근거, 부과기준의 사용 및 운영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